

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(수정)

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5일

전 주 시 장

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. ~ 용자 소진 시까지
- 용자규모 : **상반기 92억원**
 - ※ 용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금액 소진 시 접수 마감
- 지원내용 : 업체별 용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
- 지원대상 :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

※ 「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용자대상업체

- ① 제조업체
- 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및 택시 운송업체
- ③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
- ④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
- ⑤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
- ⑥ 바이전주(Buy Jeonju) 우수업체
- ⑦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- ⑧ 「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
- ⑨ 지식서비스산업업체
- ⑩ 「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」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
- ⑪ 재난재해,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

II

세부지원내용

□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

지원업종	세 부 지 원 대 상																				
제조업	○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																				
지식서비스 산업	○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 업종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해당업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td> <td>582</td> </tr> <tr> <td>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</td> <td>5911</td> </tr> <tr> <td>○전기통신업</td> <td>612</td> </tr> <tr> <td>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</td> <td>62</td> </tr> <tr> <td>○정보서비스업</td> <td>63</td> </tr> <tr> <td>○연구개발업</td> <td>70</td> </tr> <tr> <td>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</td> <td>72</td> </tr> <tr> <td>○전문디자인업</td> <td>732</td> </tr> <tr> <td>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</td> <td>7390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	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	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	○전기통신업	612	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	○정보서비스업	63	○연구개발업	70	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	○전문디자인업	732	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	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																			
	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																			
	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																			
	○전기통신업	612																			
	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																			
	○정보서비스업	63																			
	○연구개발업	70																			
	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																			
○전문디자인업	732																				
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																				

□ 지원내용

- 융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
 - 융자한도액 : 연간매출액의 1/2범위 이내(신청액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)
- 융자(이차보전)기간 : 2년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)
- 대출취급은행 :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(9개소)
 - 전북, KB국민, 신한, IBK기업, KEB하나, KDB산업, 우리, NH농협, 수협
- 이차보전율 : 최대 3.5%
 - 일반기업 3.0%
 - 여성·장애인기업, 벤처·바이전주,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3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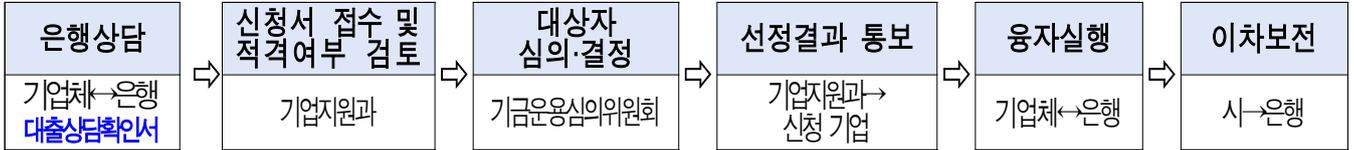
□ 지원제외

-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(별첨2)
-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
- 기지원받은 융자 만기일(조기 상환의 경우 융자금 상환일)로부터 1년 미경과 업체

III

추진절차 및 계획

□ 지원절차



□ 신청서 접수

○ 상반기 접수일정 ※ 선정 통보 및 실행기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월	접수기간	선정 통보	용자실행기간	비 고
1월	1. 12.(월) ~ 1. 16.(금)	1. 23.한	선정 통보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	용자신청기간 연장 신청시 1달 연장 가능
2월	2. 9.(월) ~ 2. 13.(금)	2. 25.한		
3월	3. 9.(월) ~ 3. 13.(금)	3. 20.한		
4월	4. 13.(월) ~ 4. 17.(금)	4. 24.한		
5월	5. 11.(월) ~ 5. 15.(금)	5. 22.한		
6월	6. 8.(월) ~ 6. 12.(금)	6. 19.한		

- 1) 각 월 내 신청분 모두 접수(각 월 내 선착순 접수 아님)
- 2) 상반기 용자액 전액 소진 시 소진되는 월까지 접수, 다음 월부터 미접수

○ 접수방법 : 방문/우편/E-mail 접수

- 주 소 : 덕진구 팔과정로 164,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
- 이메일 : stglassk10@korea.kr ※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: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

○ 신청서 : 전주시청 누리집(<https://www.jeonju.go.kr>) 고시/광고 다운

○ 제출서류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구 분	구 비 서 류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붙임 1) 용자신청서 1부 ○(붙임 2) 대출상담확인서 1부 ○(붙임 4)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○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○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※ 회계사·세무사 직인 날인 필 ※ 2개년 재무제표 부재 업체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 신고서, 개시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서류 제출 ○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○(붙임1-1) 사업계획서 1부 ○(붙임 3)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○중소기업 확인서 1부
해당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제조업체)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(사업장면적이 500㎡미만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·제조시설) ○(지식서비스산업)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부 ○이차보전을 증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 사본 1부 (중소벤처기업청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벤처캐피탈협회 확인) -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-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-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-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○특허, 실용신안권, 디자인, 상표, 저작권 등록 사본(특허청) ○국내외 규격 인증(품질검증, 제품인증) 증빙 사본(GMP, HACCP, ISO, KS, CE 등) ○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,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○수출실적 확인증명(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) ○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○시정참여(포상, 각종행사 참여 등) 증빙서류

□ 지원 대상 결정

- 용자평가표[별첨1]에 의거 총 100점 중, 40점 이상인 업체 지원
 - ※ 용자 제외업종, 지방세 체납업체, 용자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
-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평가표[별첨1]에 의거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 자금 범위에서 지원 한도금액 결정
-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

□ 용자 신청

-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**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** 거래 은행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(담보 또는 신용보증서)에 의하여 **대출 신청**
 - ☞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개월 연장가능
 - ☞ 선정통보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대출하지 못할 경우, 용자지원 결정 실효

□ 이행 및 유의사항

- 관외 전출, 휴·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또는 업체 명칭·대표자·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자진하여 전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
- 여성·장애인기업, 벤처·바이전주 및 우수향토기업 등 3.5%의 이자보전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 만료에 맞춰 연장 완료 후 전주시 통보
 - ※ 연장 만료 시, 만료 기간 동안 3% 이자보전을 적용

□ 기타사항

-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와 전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
- 기타문의 : 기업지원사무소(☎281-2068)

- 붙임 1.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신청서 1부.
1-1. 사업계획서 1부.
2. 대출상담확인서 1부.
3.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.
4.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협약서 1부.

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

평가사항		내 용	배 점	
기업건실도 (50)	연간 매출액 (10)	◦ 15억원 이상	10	
		◦ 10억원이상 ~ 15억원미만	8	
		◦ 5억원이상 ~ 10억원미만	6	
		◦ 5억원미만	4	
	자산규모 (10)	◦ 10억원미만	10	
		◦ 10억원이상 ~ 20억원미만	8	
		◦ 20억원이상	6	
	자기자본 비율 (10)	◦ 50% 이상	10	
		◦ 30% 이상 ~ 50% 미만	8	
		◦ 10% 이상 ~ 30% 미만	6	
		◦ 10% 미만	4	
	사업영위기간 (10)	◦ 10년 이상	10	
		◦ 7년이상 ~ 10년 미만	8	
		◦ 5년이상 ~ 7년 미만	7	
		◦ 3년이상 ~ 5년 미만	6	
		◦ 3년 미만	5	
성장 가능성 (10)	◦ 신규 융자업체	10		
	◦ 1회 이상 기용자업체	7		
	◦ 2회 이상 기용자업체	5		
	◦ 3회 이상 기용자업체	3		
기업역량 (30)	매출액 증가율 (10)	◦ 20% 이상	10	
		◦ 10%이상 ~ 20%미만	8	
		◦ 0%이상 ~ 10%미만	6	
		◦ 0%미만	3	
	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(15)	◦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(의장)·상표, 저작권 등록 등 ◦ 국내인증(품질검증, 제품인증), 국외인증 (건당 3점)	15	
		수출기업 여부 (5)	◦ 수출액 1억원(100,000\$) 이상	5
			◦ 수출액 1억원(100,000\$) 미만	3
◦ 수출실적 없음	0			
지역경제기여도 (20)	고용인원 (15)	◦ 20인이상	15	
		◦ 10인이상 ~ 20인미만	12	
		◦ 5인이상 ~ 10인미만	9	
		◦ 5인미만	6	
	지역사회 공헌 (5)	◦ 3년간(2023~2025) 시책설명회·간담회,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(각 1점)	5	
가점사항 (15)	기업인증 (3)	◦ 벤처기업,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녹색인증기업 ◦ 신기술(NET-NEP)인증기업 ◦ 기업투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	3	
		기 타 (10)	◦ 우수향토기업, 바이전주우수업체	5
			◦ 유망중소기업, 도지사인증상품기업	3
	◦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		2	
포상실적 (2)	◦ 기업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상(최근 3년)	2		
소 계	115			
감 점	융자포기	◦ 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(대출 미실행)기업	-3	
	중대재해 발생 시	◦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	-5	
		◦ 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	-3	
총 계				

[별첨 2]

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○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49호)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(KSIC)	융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(42203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익업	731	수익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5 中	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[붙임 1-1]

사 업 계 획 서

구 분	내 용
1. 사업기간	○ 2026. . . ~ 20 . . . (년간) ※ 사업기간 2년
2. 사업개요	○
3.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(산출 근거)	○
4. 소요자금 조달방법 (자기자본, 융자, 기타)	○ 자기자본 : 백만원 ○ 융자() : 백만원 ○ 기타() : 백만원 ○ 합계 : 백만원
5. 생산효과 및 수익성	○
6. 융자금 상환 계획	○ 만기 시 일시상환 () ○ 기간 내 분할상환 ()
7. 기 타	○

[붙임 4]

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

업 체 명

대 표 자

소 재 지

용자신청금액

「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 제8조(용자 신청), 제13조(용자금의 상환), 제20조(변경사항통보), 제21조(사후관리)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불이행시 전주시 관련 규정에 따른 용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용자지원일부터 용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지원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.
 -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법인전환, 은행 변경 등
2. 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·휴업,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용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,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
3.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(재무제표 등)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.

※ 용자 불가사항 : 대출자금 대환용, 은행 재테크,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,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:

(인)